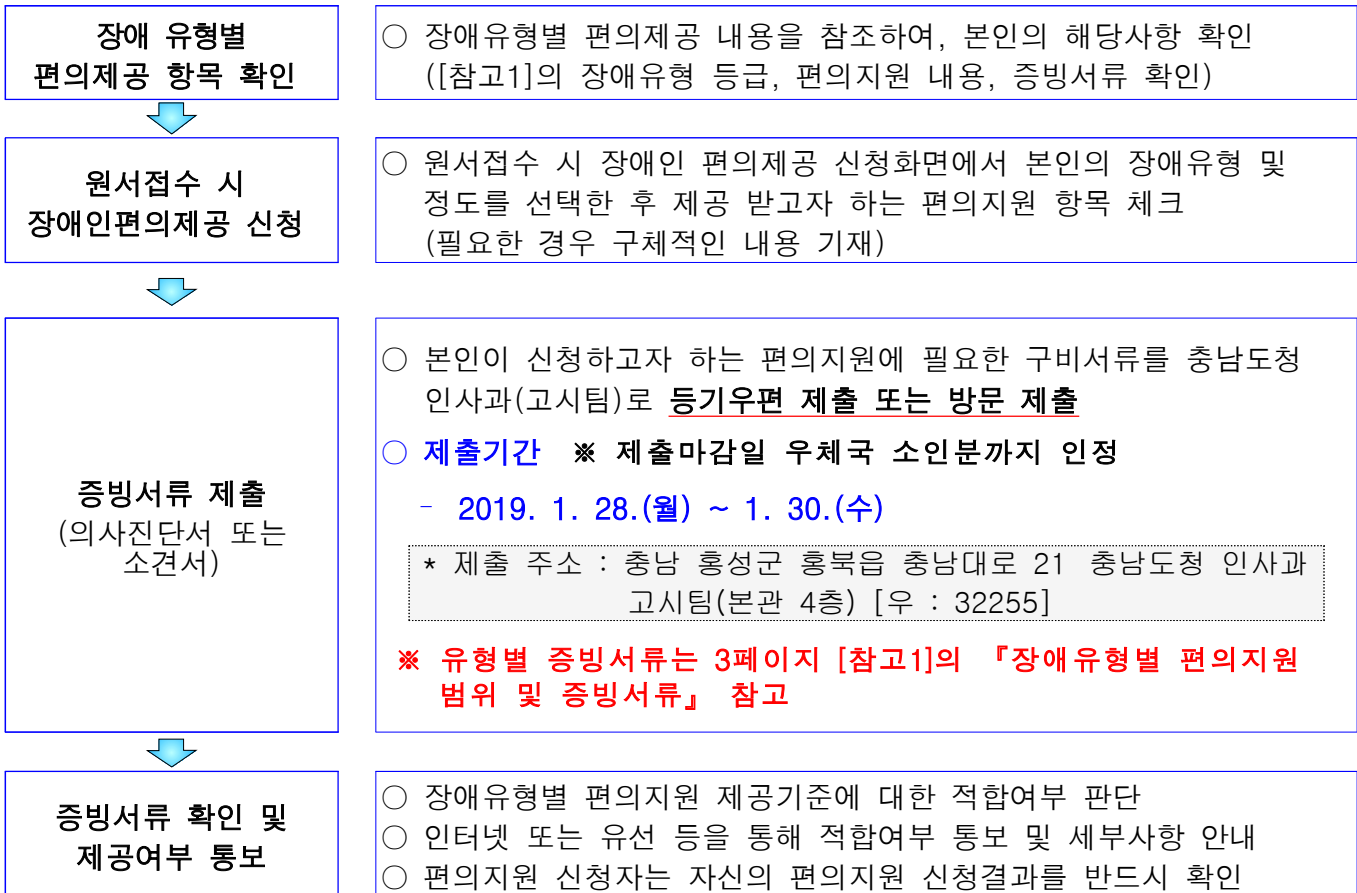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

1 편의지원 제공 대상

-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청각·뇌병변 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특수·중복 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2 편의지원 신청 절차



3 편의지원 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1.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 제공 대상여부, 증빙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3쪽 참고)'를 확인 [의사진단 (소견)서 제출 시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이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하게 인정됨]
2. 대필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응시자는 신청내용 입력란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 됩니다. ([참고2]발급일자 및 발급 내용 확인)
※ 다만,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http://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4. 시험시간연장, 점자문제지, 음성지원 등의 편의지원은 제한됩니다.
5.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인사과 고시팀(041-635-35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019년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 및 등급			필기시험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지체 장애	상지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1급~3급	· 답안지 대필	
	4급~6급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하지	1급~6급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뇌병변 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1급~3급		· 답안지 대필	
	4급~6급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시각 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1급~2급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청각 장애	2급~6급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기타	임신부		· 높낮이 조절 책상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 소견서 1부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검토후 안내)
	과민성대장 (방광)증후군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2종류 중 택1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다만,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가능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

구 분	제1회 경력경쟁임용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19년 1월 30일
진단서(소견서) 발급일	2017년 1월 30일 이후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임 신 부	상기인은 임신 6주, 필기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산모로서, 자궁의 확대에 의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